K·C·A
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s Association



2026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국내외 화장품 포장 규제 동향

목차

Part Ⅰ. 화장품 포장규제의 변화

1. 재생원료 활용·포장 최소화·재활용성 제고
2. 주요 변경사항과 적용 일정

Part Ⅱ. 재생원료 활용 관련 제도 변화

1. 한국 : 재활용 의무량 감경 관련 변경사항
2. 미국 오리건 : 생산자 분담금 인센티브
3. 일본 :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및 보고제도

Part Ⅲ.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 변화

1. 한국: 수송포장 세부기준 개정사항
2. 유럽: 수송포장의 빈공간 비율 제한

Part Ⅳ. 용기 재질·구조 관련 제도 변화

1. 미국 캘리포니아 : SB 54 세부 이행사항
2. 일본 : 화장품 용기 설계 인정기준

Part Ⅴ. 기업 대응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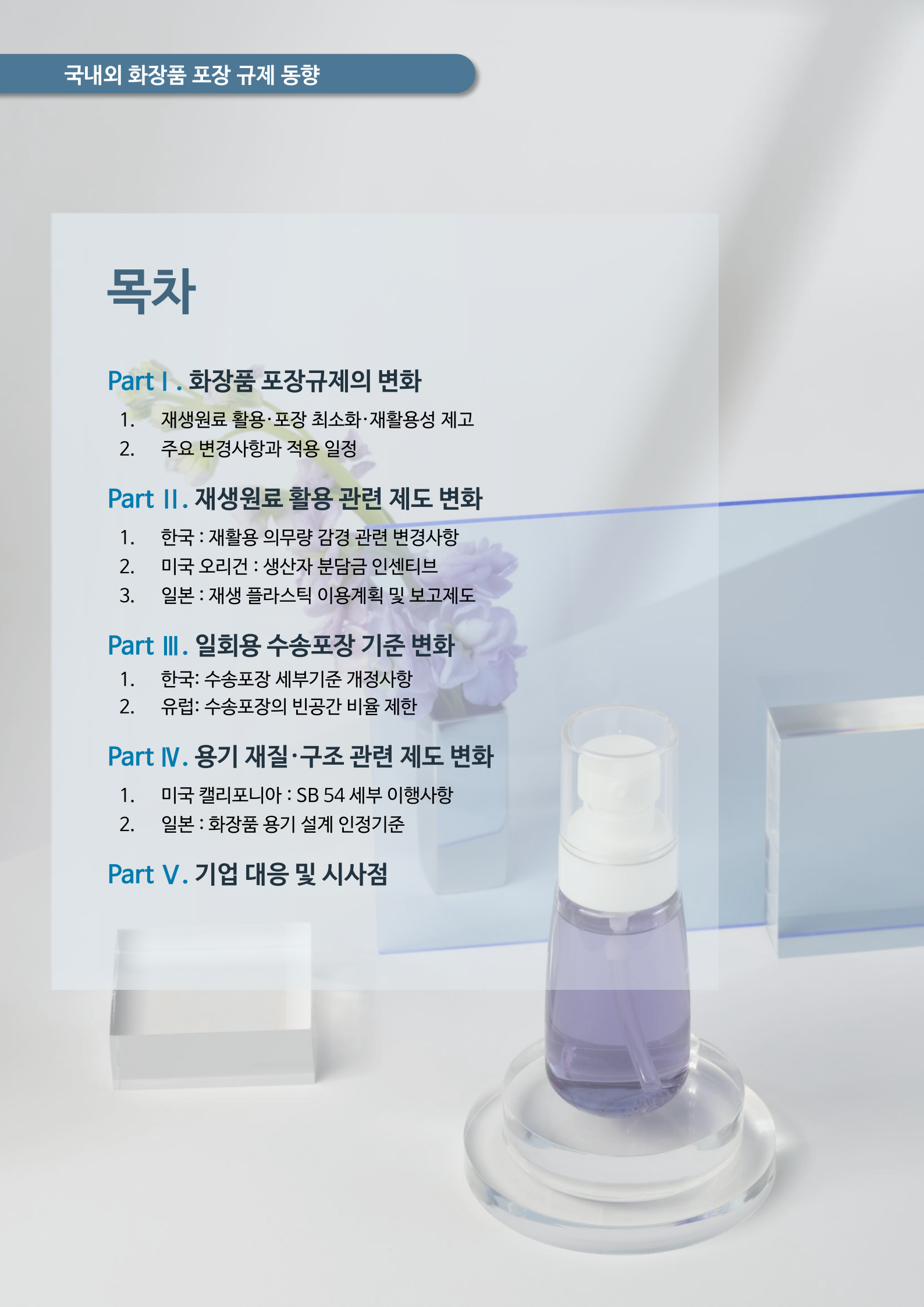

I

화장품 포장규제의 변화

화장품 포장 관련 제도는 자원 사용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재활용 의무량 감경 산정 시 인정되는 재생원료 사용량의 상한이 높아졌으며,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 유형별 적용 예외와 포장재별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제도 변화와 함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화장품 포장 관련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화장품 기업이 포장재를 선택하고 제품·배송 포장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1. 재생원료 활용 · 포장 최소화 · 재활용성 제고

화장품 포장 관련 제도는 자원 사용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활용,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향상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하고 제품의 포장방법을 관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재활용 의무량 감경 산정 시 인정되는 재생원료 사용량의 상한이 높아졌다. 또한 제품 파손 방지와 자동화 설비를 이용한 포장 등 배송 여건을 반영해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산정 방법과 포장 유형별 적용 예외가 구체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제도 변화와 함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포장 관련 제도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의 포장 환경성과에 따른 생산자 분담금 인센티브와 캘리포니아주 「SB 54」의 포장 감량·재활용 이행기준을 다룬다. 일본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제출 및 실적 보고 제도와 샴푸·바디워시 등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설계인정 사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따른 수송포장의 빈 공간 비율 기준과 적용 일정을 살펴보고, 화장품 기업이 포장재를 선택하고 용기를 설계하거나 제품을 배송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국내외 화장품 포장 관련 제도의 주요 검토 영역

구분	재생원료 활용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제고
	**재활용 의무량 감경 고시** 재생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조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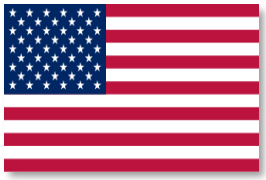	**(오리건주) Oregon Program Plan** 생산자 분담금 인센티브	**(캘리포니아주) SB 54 · 시행규정** 플라스틱 포장 감량[1]	**(캘리포니아주) SB 54 · 시행규정** 포장재 재활용성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보고	**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 가정용 화장품 용기 설계 인정기준: 경량화	**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 가정용 화장품 용기 설계 인정기준: 재활용성
	**PPWR 제7조**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함량	**PPWR 제24조 제1항**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제한	**PPWR 제6조** 포장재 재활용성

본 보고서 업데이트 항목 | 본 보고서 제외 항목

1) 캘리포니아 SB 54의 포장 감량 목표는 Part Ⅳ에서 포장재 재활용성 기준과 함께 소개한다.

2. 주요 변경사항과 적용 일정

2026년에는 국내에서 재활용 의무량 감경 산정 시 인정되는 재생원료 사용량의 상한이 높아졌으며,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산정 방법과 포장 유형별 적용 예외가 구체화되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가정용 화장품 용기 설계인정 사례와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보고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B 54 시행규정 등 주요 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도 시행일과 기업의 실적 인정·계획 제출·보고 시점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올해의 주요 변경사항과 향후 적용 일정을 구분하였다. 후속 법령에 따라 적용 시점이 정해지는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주요 변경사항과 적용 일정

2026년

1~2월

재활용 의무량 감경 인정한도 상향
- 2월 3일, 고시 개정 · 시행
-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 출고량의 15% ➜ 20%
  - *'25년 사용실적부터 적용*

가정용 화장품 용기 설계인정
- 1월 25일 설계인정기준 시행
- 2월 10일, 최초 인정제품 발표
  - *기업이 신청하는 자발적 인정제도*

4~5월

일회용 수송포장 세부기준 개정
- 4월 20일, 간이측정방법 개정 · 시행
  - *적용 조건 및 공간비율 · 포장횟수 산출방법 정비*
- 4월 30일, 기존 기준 계도 종료 후 전면 시행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시행
- 4월 1일,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제출 · 정기보고 제도 도입

캘리포니아주 SB 54
- 5월 1일, 세부 시행규정 발효

8~9월

PPWR 일반 적용 시작
- 8월 12일, 일반 적용 시작
  - *세부 의무는 조항별 일정에 따라 단계*
- 조항별 일정에 따라 단계 적용[1)]

2027년

오리건주 분담금 인센티브 확대
- 2027년분 분담금: 기존 보너스 A유지
- 환경영향 감축 보너스 B,C 추가

재생 플라스틱 첫 이용계획 제출
- 대상 사업자는 9월 말까지 제출

2028년

재생 플라스틱 첫 이용실적 정기보고
- 대상 사업자는 9월 말까지 이용실적 보고

2030년

PPWR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제24조 제1항)
- 2030년 1월 1일과 빈 공간 비율 산정방법을 정하는 시행 법령의 발효 후 3년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준수

1) 대한화장품협회 인사이트 보고서,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2026년 8월」 5페이지 참고

II

재생원료 활용 관련 제도 변화

한국과 미국 오리건주, 일본은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을 감경하고, 미국 오리건주는 생산자 분담금에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일본은 대상 사업자가 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용계획과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국내 재활용 의무량 감경 기준의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오리건주의 분담금 인센티브와 일본의 이용계획·보고제도를 살펴보고, 화장품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적용 기준과 이행 일정을 정리한다.





1. 국내 주요 규제 변경사항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개정에 따라, 2025년도 사용실적부터 재활용 의무량 감경 산정 시 인정되는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상한이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에서 20%로 상향되었다. 이 상한은 2022년 5%, 2023년 10%, 2024년 15%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화장품 기업이 국내에 출고한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에 사용한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사용실적을 증빙하여 재활용 의무량 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 의무량 감경 산정식

출고량 ✖ 해당 연도 제품 및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 재생원료 사용비율*

* 재생원료 사용비율 = 재생원료량／출고량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을 위한 실적서 및 산출 기초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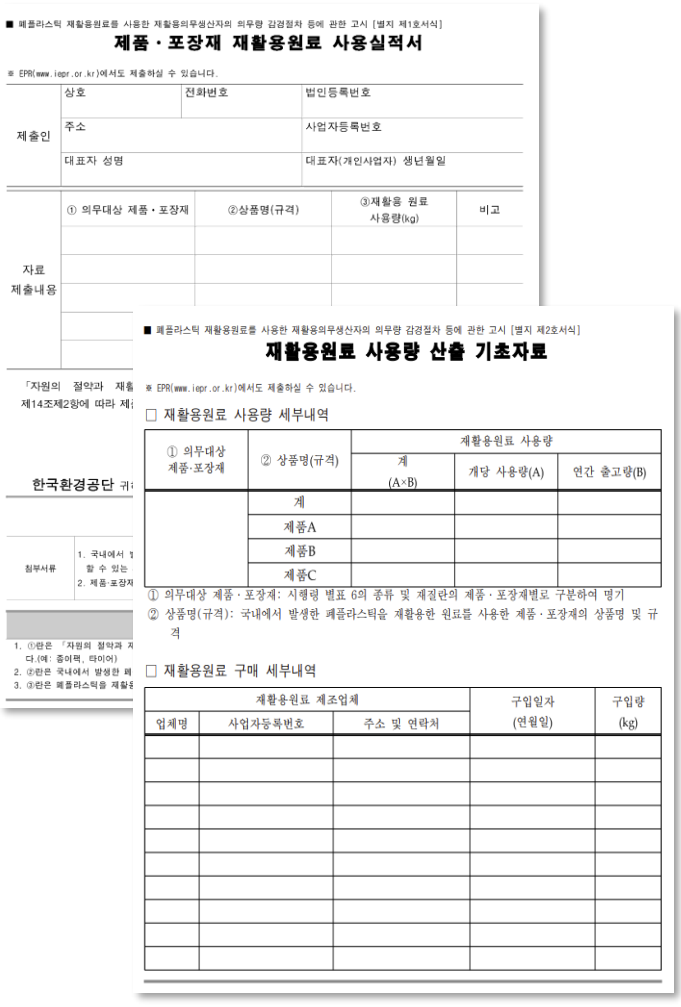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품 · 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 제출내용	① 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②상품명(규격)	③재활용 원료 사용량(kg)	비고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재활용원료 사용량 세부내역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② 상품명(규격)	재활용원료 사용량		
		계 (A×B)	개당 사용량(A)	연간 출고량(B)
	계			
	제품A			
	제품B			
	제품C			

① 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 ·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명기
② 상품명(규격):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 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

☐ 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

재활용원료 제조업체			구입일자 (연월일)	구입량 (kg)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포장재 Specification 관리

↓

재생원료 함량 데이터 확보

↓

출고 데이터 연계

↓

공급업체 증빙 확보

↓

재생원료 사용실적 산출.검증 체계화

재생원료 적용 여부뿐 아니라 **용기·포장재 규격별 재생원료 함량 및 중량, 연간 출고량, 재생원료 구매 · 공급 정보를 연결**하여 실제 사용량을 산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수준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2. 오리건주 'Oregon Program Plan'

2.1 Oregon Program Plan[1] 이란?

오리건주는 Plastic Pollution and Recycling Modernization Act(RMA)에 따라 생산자가 승인된 생산자책임기구(PRO)를 통해 EPR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Circular Action Alliance(CAA)가 오리건주 내 유일한 승인 PRO로서 Program Plan을 운영하고 있다.

동 Program Plan은 포장재의 재질과 공급량에 따라 기본 분담금을 산정하는 한편, LCA 기반의 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 성과를 분담금 감면에 반영하는 Eco-modulation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장재 등 적용 대상 물질[2]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저감하고, 환경영향 저감 성과에 따라 Bonus A·B·C를 차등 적용한다. 2025년 9월 이후에는 각 Bonus의 세부 적용요건 및 산정방식이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Bonus C의 적용 대상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3]

Bonus A·B·C: 환경영향의 측정에서 포장 개선과 순환형 모델 전환까지

Bonus별 판단 질문

Measure	Bonus A	현행 포장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적격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공개했는가?
Improve	Bonus B	포장 변경 전·후의 환경영향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저감 성과**를 입증했는가?
Transform	Bonus C	**일회용 포장을 재사용·리필 모델로 전환**하고 실제 이용실적을 반영한 저감효과를 입증했는가?

또한, 오리건주 내 적용 대상 물질 공급량 기준 상위 25개 생산자[4]는 2년마다 판매·유통하는 Covered Products의 최소 1%에 대해 Life Cycle Evaluation(LCE)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비 명단과 최종 명단에 모두 포함된 생산자의 최초 평가 결과 제출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The Procter & Gamble Company(P&G)가 상위 25개 생산자에 포함된 만큼, 향후 공개되는 LCE 결과와 Eco-modulation Bonus 활용 여부를 화장품 산업의 주요 선례로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산업 주요 Insight

① 제품 단위 데이터	② 환경영향 정량화	③ 포장 개선
용기·펌프·캡·라벨 등 Packaging BOM 관리	SKU별 LCA 및 환경영향 데이터 확보	경량화·PCR·재질 변경·Refill
Reporting 기반	Bonus A 기반	Bonus B·C

오리건 EPR 대응을 위해 화장품 기업은 **제품별 Packaging BOM과 공급망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포장 개선 성과를 LCA 기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CAAamendOPPa2.pdf
2) 적용 대상 물질(Covered Material): 오리건 EPR 제도상 생산자책임이 적용되는 포장재, 인쇄·필기용지 및 식품서비스용품으로, 플라스틱(PET·HDPE·PP·PE·PS 등), 종이·판지, 유리, 알루미늄·철 등 금속 및 복합재질 등이 포함된다.
3) Producer Guidance: Oregon Eco-Modulation Bonus C
4)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 Life Cycle Evaluation : Recycling : State of Oregon

2.2 Eco-modulation Bonus A·B·C 세부 적용기준

Eco-modulation Bonus는 환경영향의 측정·공개(Bonus A)에서 포장 개선(Bonus B), 재사용·리필 모델 전환(Bonus C)까지 환경성과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동일 연도 내 동일 SKU에는 하나의 Bonus만 적용할 수 있다. 2026년 Bonus 신청을 위한 적격 LCA 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Circular Action Alliance(CAA)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Bonus는 차년도인 2027년 EPR 분담금에서 Credit으로 반영된다.

Bonus A·B·C 상세 비교

	Bonus A LCA 평가·공개	Bonus B 포장 개선에 따른 영향 저감	Bonus C Reuse·Refill 전환
적용요건	• 적격 SKU 또는 SKU Batch의 LCA 수행 후 LCA 결과 공개 • 독립적인 제3자 Critical Review 수행	• 포장 변경 전·후 LCA • 최소 10% 이상의 환경영향 저감 • 경량화, 재질·구조 변경 등 생산자의 개선조치와 저감효과 입증	• Single-use → Reusable / Refillable Packaging 전환 • 기존·전환 모델 간 LCA • 실제 Refill / Return 실적 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 저감효과 입증
적용포장	• 1차 포장재[1]	• 1차 포장재	• 1차 포장재
산정방식 및 혜택	• 제품 기본 분담금[2]의 10% • LCA 보고서당 최대 $20,000	• 환경영향 저감률에 따라 3개 Tier로 구분하여 Bonus율 및 상한 차등 적용	• 재사용·리필 전환의 성과 입증 방식에 따라 Option으로 구분 • Option별 Bonus율·상한·적용 기간 및 환경영향 저감률(Tier) 반영 방식 상이
핵심 포인트	• 현재 포장의 환경영향을 측정하고 공개함에 따라 부여되는 인센티브	• 환경영향 저감 수준이 높을수록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 일회용 포장의 단순 감량·재질 개선을 넘어, 재사용·리필 모델로의 전환과 실제 이용성과를 기반으로 환경영향 저감을 유도하는 전환형 인센티브

1) 제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제품을 담는 Primary Packaging 중심
2) 분담금(Producer Fee) = 기본 분담금 + 프로그램 적립금. 기본 분담금은 재질·공급량에 따라 산정되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며, 프로그램 적립금은 향후 운영 및 Eco-modulation 재원으로 활용된다. Bonus A·B·C는 프로그램 적립금을 제외한 해당 SKU/SKU Batch의 기본 분담금에 적용된다.



보너스 산정 방법 알아보기

Bonus A [1)]

Q. 비누 SKU 1개에 대해 LCA를 수행하면 얼마의 Bonus를 받을 수 있나요?

생산자가 원래 부담하는 수수료 = $75,000

* PET 총 공급량 100,000 lbs x PET 수수료율 $0.75

→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너스 적용

* $0.60 (PET 관리 및 프로그램 행정비) + $0.15 (프로그램 적립금)

비누 SKU 1개에 대한 보너스 A = $1,500

* LCA를 실시한 비누 SKU 1개에 관련된 PET 공급량 25,000 lbs x 보너스가 적용되는 수수료 $0.60 x 보너스 A 비율 10%

최종 납부 수수료 = $73,500

* 생산자가 원래 부담하는 수수료 $75,000 – 보너스 A $1,500

Q. 복수의 SKU에 대해 LCA를 수행하면 얼마의 Bonus를 받을 수 있나요?

① LCA 대상 총 공급량 = 75,000 lbs

* 비누 25,000 lbs + 조미료 50,000 lbs

② SKU 2개에 대한 보너스 A = $4,500

* PET 총 공급량 75,000 lbs x 보너스가 적용되는 수수료 $0.60 x 보너스 A 비율 10%

최종 납부 수수료 = $70,500

* 생산자가 원래 부담하는 수수료 $75,000 – 보너스 A $4,500

Bonus A 신청사례 [2)]

HORIZON ORGANIC

| 기업개요 |

우유·크리머·요거트·치즈·버터 등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미국 소재 기업

| Bonus A 적용 사례 |

Horizon Organic Dairy는 2025년 자사의 **64oz Gable Top Carton** 및 **TetraPak Carton**을 대상으로 전과정 평가를 수행 및 공개하여 Oregon EPR의 Bonus A를 적용받았다.



| LCA 및 신청 절차 |

① 대상 제품/SKU 선정
② 포장재 BOM(Bill of Materials) 확보
③ 원료·제조·운송·폐기 단계별 데이터 수집
④ LCA 모델링
⑤ 복수 환경영향 범주 평가
⑥ 민감도 분석
⑦ 제3자 검증
⑧ 결과 공개
⑨ Bonus A 신청

1) Oregon Program Plan
2) Life Cycle Assessment (LCA) Project Report



보너스 산정 방법 알아보기

Bonus B

Tier 구분	환경영향 저감률	보너스 지급율 (기본 수수료 기준)	보너스 상한 금액
Tier 1	10~40%	20%	$40,000
Tier 2	40~70%	25%	$45,000
Tier 3	70% 초과	30%	$50,000

※ 보너스 수준은 Bonus A 상당액에 각각 2배, 2.5배, 3배의 배수를 적용한 것과 동일함

Q. 포장재 종류를 변경하면 얼마의 Bonus를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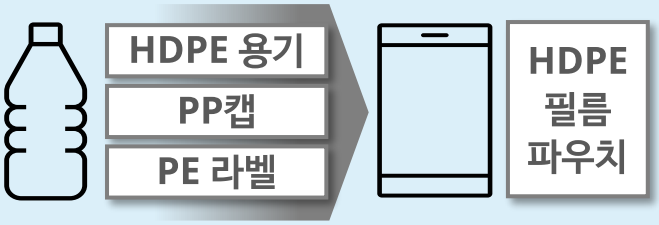

① HDPE 필름 파우치 수수료 = $99,000

* SKU 공급량 180,000 lbs x 필름 파우치 수수료 $0.55

② 포장재 종류 변경에 따른 보너스 = $23,760

* 환경영향 82% 감소를 입증하여 Tier 3에 해당
* HDPE 필름 공급량 180,000 lbs x 적립금 제외한 수수료 $0.44 x Tier 3 보너스 비율 0.3

③ 최종 납부 수수료 = $75,240

* HDPE 필름 수수료 $99,000 – 보너스 B $23,760

Q. 포장재 소재를 개선하면 얼마의 Bonus를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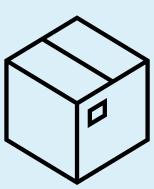

HDPE 필름 파우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페이퍼보드

① 기존 포장재 총 수수료 = $120,000

* HDPE Film Pouch: 100,000 lbs × 55¢/lb = $55,000
  Plastic Laminate: 50,000 lbs × 79¢/lb = $39,500
  Paperboard: 850,000 lbs × 3¢/lb = $25,500

② 페이퍼보드 PCR 함량 확대에 따른 보너스 = $24,000

* 환경영향 51% 감소를 입증하여 Tier 2에 해당
* Bonus A $9,600 ((총 수수료 $120,000 – 적립금 24,000) x 0.10) x Tier 2 보너스 배율 2.5

③ 최종 납부 수수료 = $96,000

* 기존 포장재 총 수수료 $120,000 – 보너스 B $24,000

1) Oregon Program Plan



보너스 산정 방법 알아보기

Bonus C [1)]

Bonus C는 Bonus B와 동일한 수수료 Tier를 적용하되, 보너스 지급 경로를 3가지 Option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구분	Option 1*	Option 2	Option 3
포장재 전환	일회용 → 재사용	일회용 → 재사용	일회용 → 리필
적용 실적	예상 회수율	실제 회수율	실제 리필율
보너스 배수 (Bonus A 기준)	최대 2배	최소 2배	최소 2배
SKU당 최대 금액	$40,000	$50,000	$50,000
지급 기간	3년	3년	1년
재신청	3년 후 가능	3년 후 가능	3년 주기 가능

*Option 1은 Tier 1에만 적용됨

Q. 일회용 손세정제 디스펜서를 리필형 구조로 전환하면 얼마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HDPE 용기
HDPE 캡
PET 용기 + 펌프

Tier 1 수준의 환경영향 저감

리필형 디스펜서
대용량 리필 용기

① 기존 포장재 총 수수료 = $243,320

* HDPE 용기: 680,000 lbs × 22¢/lb = $149,600
  HDPE 캡: 37,000 lbs × 26¢/lb = $9,620
  PET 용기 + 펌프: 145,000 lbs × 58¢/lb = $84,100

② 리필 구조로 전환함에 따른 보너스 = $40,000

* Bonus A $20,000 x Tier 1 보너스 배율 2 =$ 40,000

③ 최종 납부 수수료 = $203,320

* 기존 포장재 수수료 $243,320 – 보너스 C $40,000

1) Producer Guidance: Oregon Eco-Modulation Bonus C

3.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및 보고제도

3.1 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와 계획 · 보고 대상

일본은 2025년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26년 4월부터 플라스틱 용기·포장 등 지정 제품에 대한 재생 플라스틱 이용촉진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 사업자는 자사의 여건을 고려해 재생 플라스틱 이용량과 이용률의 목표를 정한다. 여기서 이용률은 용기·포장에 사용한 전체 플라스틱 중 재생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뜻한다. 이 가운데 대상 용기·포장의 연간 생산량과 직접 수입판매량을 법인 단위로 합산해 1만 톤 이상인 사업자는 이용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1) 2)]

2026년 7월 경제산업성은 용기·포장편 가이드라인을 공표해 대상 품목과 물량 산정 방법을 구체화했다. 화장품 기업은 ① 대상 용기·포장의 범위, ② 제조·발주·수입판매 중 자사의 역할, ③ 법인별 취급 물량을 차례로 확인해 계획·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 설정과 계획 · 보고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용기·포장의 대상 범위</td><td>✓ 경제산업성 지침에 따른 용기 · 포장 분류
<table>
<tr><th>구분</th><th>지침상 범위</th><th>화장품 적용 시 확인사항</th></tr>
<tr><td>①PET병</td><td>음료·주류와 간장·식초 등 지정 조미료에 사용하는 PET병 중 지침 요건을 충족하는 용기</td><td>–</td></tr>
<tr><td>②기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td><td>대상 플라스틱 용기·포장 중 ①을 제외한 용기·포장</td><td>일반 화장품의 플라스틱 병·튜브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지침에서는 용기의 일부로 쓰이는 샴푸 펌프와 액상 화장품 병의 속마개도 예시로 제시함.</td></tr>
<tr><td>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td><td>지정 PET병 이외의 식음료 용기·포장,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기기 등의 용기·포장, 지정 PET 병의 캡·라벨 등</td><td>같은 재질의 샴푸병이라도 일본에서 내용물이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면 해당 용기·포장은 제외됨.</td></tr>
</table></td></tr>
<tr><td>대상 사업자</td><td>✓ 대상 용기·포장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 자기 사업에 사용할 용기·포장의 제조를 발주하는 사업자, 해당 용기·포장에 담긴 상품을 일본에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제산업성 지침에서는 일본 화장품 제조사가 해외에 빈 용기를 발주해 직접 수입한 뒤, 내용물을 충전해 판매하는 거래도 수입판매 유형의 하나로 제시한다.</td></tr>
<tr><td>계획 · 보고 제출기준</td><td>✓ 계획·보고 대상은 제출연도보다 2년 전의 실적으로 판단한다. 2027년 최초 제출의 경우, 2025년도에 각 법인이 생산한 대상 용기·포장의 중량과 직접 수입해 판매한 대상 용기·포장의 중량을 합산해 1만 톤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다.
✓ 중량은 내용물을 제외한 용기·포장 자체의 무게로 산정한다. 생산량에는 자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조를 발주한 물량과 일본에서 생산해 수출한 물량도 포함한다.</td></tr>
<tr><td>이행 일정</td><td>✓ 대상 사업자는 2027년 9월 말까지 최초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8년부터 매년 9월 말까지 이용실적을 보고해야 한다.</td></tr>
</table>

1) 일본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이용계획 제출)·제24조(정기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법률 · 시행령
2)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순환경제과,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작성 및 정기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플라스틱제 용기·포장편」, 2026. 7

3.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및 보고제도

3.2 이용계획서 · 정기보고서의 제출 항목과 일정

일본은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실제 이용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계획서와 정기보고서는 모두 용기·포장을 직접 제조한 물량,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를 발주한 물량, 직접 수입해 판매한 물량으로 구분한다. [1) 2)]

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 설정과 계획 · 보고

① 이용계획서(양식 제1호) | 목표연도와 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

사업자는 **2027년 9월 말까지** 최초 이용계획서를 제출한다. 제출연도부터 5년 이내에서 목표연도를 정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할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량(t)과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이용률(%)을 기재한다.
용기·포장에 재생재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선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적는다. 제출한 계획에 변경이 없으면 기존 목표연도의 9월 말까지 다음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2)]

② 정기보고서(양식 제2호) | 보고연도와 전년도의 재생 플라스틱 이용실적

사업자는 **2028년 9월 말까지** 최초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9월 말까지 이용실적을 보고한다. 정기보고서에는 보고연도와 그 전년도의 실제 이용량(t)과 이용률(%)을 나란히 기재한다.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되, 이용계획서에 제시한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면 사유를 생략할 수 있다. [1) 2)]

③ 화장품 기업의 대응 | 화장품 포장재 관련 정보 제공

구분	주요 확인사항
이용계획 수립	**[용기 사양서와 예상 납품 수량]** ✓ 수출 제품에 사용된 용기·포장의 플라스틱 사용량,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및 사용비율 등 ✓ (필요 시) 구성요소별 소재·중량 및 재생재 함량에 관한 기초자료도 포함될 수 있음.
정기보고 준비	**[실제 납품분의 용기 사양서와 납품실적표]** ✓ 완제품별 용기 품번과 포장 구성, 일본향 예상·실제 납품 수량, 용기 사양을 변경한 경우 새 사양의 적용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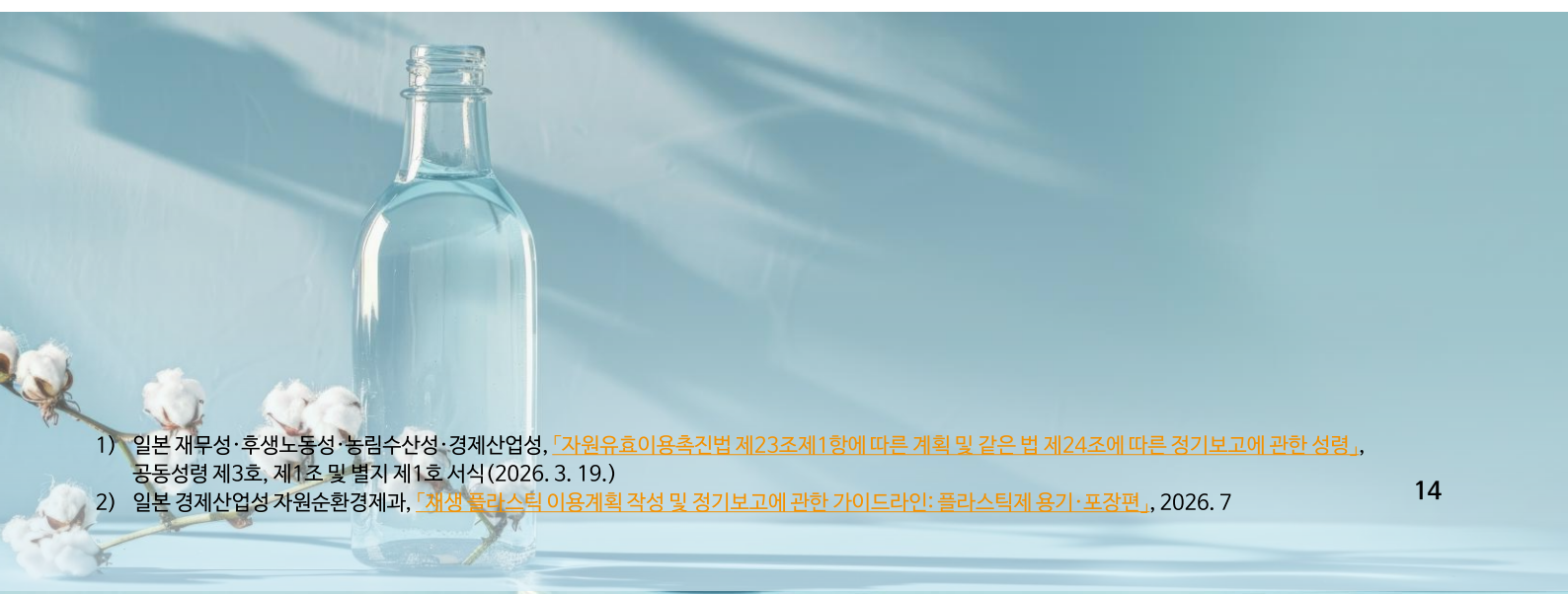

1) 일본 재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보고에 관한 성령」, 공동성령 제3호, 제1조 및 별지 제1호 서식(2026. 3. 19.)
2)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순환경제과,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작성 및 정기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플라스틱제 용기·포장편」, 2026. 7

III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 변화

화장품 배송에서는 유리병이나 액상 제품을 보호하면서도 배송상자 안의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2026년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이 개정되어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산정방법과 적용 예외가 구체화되었다. 이 장에서는 국내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제24조 제1항이 정한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기준을 함께 살펴본다.





1.「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사항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수송포장은 원칙적으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포장하는 사업자의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00억 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두 기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20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일부 개정해 배송 방식에 따른 예외를 구체화했다. 소형 수송포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장공간비율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판매제품 2개 이상을 함께 포장하거나 사용한 수송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배송봉투 등 연성포장의 치수 허용범위를 마련하고, 종이 완충재·종이봉투와 재활용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연성포장재에 적용할 포장공간비율 상한을 별도로 정했다.[2)]

주요 변경 사항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의 적용 예외

- **평균 매출액 등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포장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모두 미적용**

① 수송포장 유형별 적용 예외

- **최소 크기 포장(포장공간비율 미적용)**: 해당 물류시스템에서 취급 가능한 최소 규격의 수송포장으로, 세 변의 합이 50cm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만 미적용.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제한. 2026년 4월 20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던 자동화 장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세 변의 합 60cm 이하까지 인정.
- **합포장·재사용·파손 방지(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모두 미적용)**: 판매제품 2개 이상의 합포장, 사용한 일회용 수송포장재의 재사용 또는 고시에서 정한 파손 방지 목적의 불가피한 과대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 기준 모두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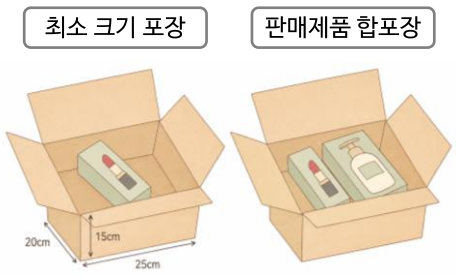

② 연성포장에 별도 치수 허용기준 신설

- 배송봉투 등 연성포장은 **제품 세 변의 합**과 **포장재 두 변의 합**을 비교하는 치수 허용범위표 적용.
-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 포장재 두 변의 합에 **봉합용 길이 50mm 가산.**

③ 종이 포장재에 별도 기준 신설

- 종이 완충재 또는 종이봉투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70% 이하** 적용.
- **종이봉투**에 치수 허용범위표를 적용하는 경우 제품 세 변의 합에서 **10% 차감.**

④ 재생원료 20% 이상 연성포장재에 별도 기준 신설

- 고시에서 정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20% 이상 함유한 일회용 연성 수송포장재**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60% 이하** 적용.
- 치수 허용범위표 적용 시 제품 세 변의 합에서 **5% 차감.**

1)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11호.
2)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제2026-101호(2026. 4. 20.), 별표 3 및 부칙 제2조.

일회용 수송포장 포장공간비율 산출 기준[1)]

$$\text{포장 공간 비율 (\%)} = \frac{C - V}{C} \times 100$$

- **C** 일회용 수송포장(상자·연성포장)의 포장용적
- **V** 배송된 제품의 제품 체적

C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용적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사용된 외부 포장재의 전체 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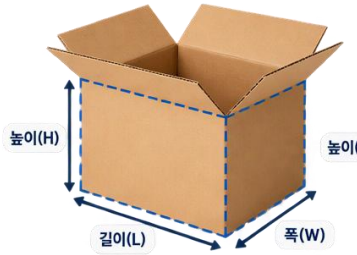

상자 (골판지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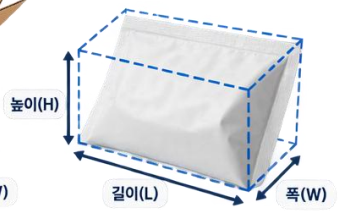

연성포장 (비닐 등)

V 배송된 제품의 제품체적

실제로 배송된 제품(내용물)의 전체 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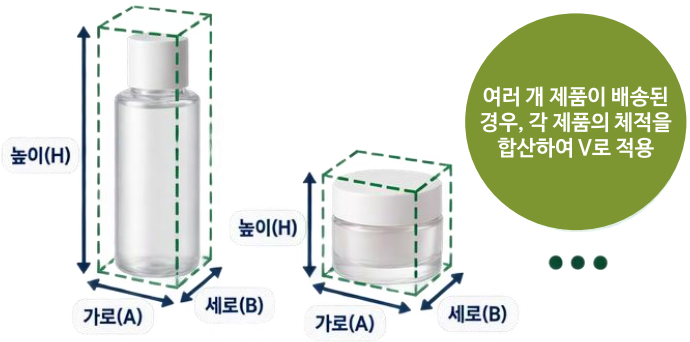

일회용 수송포장(연성포장) 두 변의 합 가로(A)+세로(B) (mm)	제품체적 산정을 위한 육면체 세 변의 합 길이(L)+폭(W)+높이(H) (mm)
600 mm 이하	320 초과 ~ 390 mm 이하
700 mm 이하	390 초과 ~ 450 mm 이하
800 mm 이하	450 초과 ~ 520 mm 이하
900 mm 이하	520 초과 ~ 580 mm 이하
1,000 mm 이하	580 초과 ~ 650 mm 이하
1,100 mm 이하	650 초과 ~ 710 mm 이하
1,200 mm 이하	710 초과 ~ 780 mm 이하
1,300 mm 이하	780 초과 ~ 840 mm 이하

일회용 수송포장 중 연성포장의 경우, 제품의 세 변 합과 포장의 두 변 합에 대한 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제품 크기 대비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 자동포장은 씰링 공간 50mm를 추가 인정하며 치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대체 적용함. 두 변의 합 600mm 이하의 소형 포장은 별도 기준을 우선 적용함.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2. EU 수송포장의 빈 공간 비율 제한

EU「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었으며, 개별 의무의 준수 시점은 조항에 따라 다르다. 이 가운데 국내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기준과 직접 비교되는 조항은 제24조 제1항이다. 2026년 상반기에 살펴본 제10조가 포장 자체의 중량과 부피를 줄이는 설계 기준이라면, 제24조 제1항은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에 제품을 담는 사업자가 포장 후 남는 빈 공간의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단상자 여러 개를 하나의 배송상자에 담는 경우, 배송상자의 총 부피에서 단상자들의 부피를 뺀 나머지가 빈 공간에 해당한다. 유리병의 파손을 막기 위해 넣은 종이 완충재나 에어쿠션이 차지하는 공간도 빈 공간으로 계산한다. 50% 상한의 준수기한은 2030년 1월 1일과 세부 산정방법을 정하는 EU 이행법령 발효 후 3년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이다.

PPWR 제24조 | 적용 대상과 빈 공간 기준

적용 대상

- 묶음, 운송, 전자상거래 포장에 제품을 담는 사업자

빈 공간 50% 이하

- 빈 공간 비율(%) = $\frac{\text{수송포장 등의 총 부피 - 내부 판매포장의 부피}}{\text{수송포장 등의 총 부피}}$ X 100

시행 일정

• 2026. 8. 12 ~	• PPWR 일반 적용 시작
• ~ 2028. 2. 12	• EU 집행위원회가 빈 공간 비율 산정방법을 정하는 이행법령 채택
• 기업 준수 기한	• 2030년 1월 1일과 이행법령 발효 후 3년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

면제 사항

- 판매포장 자체를 전자상거래 포장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의 50% 상한이 면제 (제24조 제5항)



Ⅳ

용기 재질·구조 관련 제도 변화

화장품 용기는 내용물을 보호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재활용하기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용기 몸체의 재질과 색상뿐 아니라 뚜껑·라벨 등 부속품의 재질과 결합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화장품 포장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본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B 54에 따른 포장재 감량·재활용 목표와 이행 방식을 다룬다. 일본의 경우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설계인정 기준과 실제 인정 사례를 통해 해당 기준이 제품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1. 캘리포니아주 포장재 생산자책임법(SB 54)

1.1 포장재 생산자책임법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이란?

캘리포니아는 2022년 6월「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SB 54)」를 제정하여 일회용 포장재(Single-use Packaging) 및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품(Single-use Plastic Food Service Ware)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법은 포장재의 설계부터 폐기 이후의 수거·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25% 감축, 플라스틱 포장재 및 식품용품 재활용률 65% 달성, 규제 대상 포장재의 100%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화를 목표로 한다.[1)]



▲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품



▲ 일회용 식품 포장재

1.2 이행 및 관리체계

① 적용 대상(Covered Material) 및 생산자(Producer) 정의

적용 대상	• 일회용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품 (1차·2차·3차 포장재와 포장 구성요소 포함)
생산자	•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한 기업 중 브랜드·상표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 해당 주체가 캘리포니아 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독점 라이선시, 유통·판매자 등으로 책임 주체 결정

② PRO(생산자책임기구,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참여 및 이행 의무

- Producer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PRO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Covered Material의 캘리포니아 내 판매·수입·유통이 제한됨. 단, CalRecycle 승인에 따른 개별 이행 또는 소규모 생산자 면제가 가능함.

③ 데이터 보고 및 관리

- PRO는 포장재 종류·중량·플라스틱 구성요소 수·재활용량 등을 매년 CalRecycle에 보고하며, 생산자는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고 별도 회수체계를 통한 수거·재활용 실적도 추적·보고해야 함.

④ 재정적 의무 및 제재

Plastic Pollution Mitigation Fund

- PRO는 2027~2036년 매년 5억 달러(총 50억 달러)를 기금에 납부하며, 생산자별 플라스틱 포장재 중량 및 구성요소 수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함
- 해당 기금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보건 피해 완화 등에 활용됨

위반 및 제재

- CalRecycle은 미준수 시 위반 건별·일별 최대 $5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조건 충족 시 12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허용할 수 있음
- 미준수 Producer 및 관련 소재 카테고리는 공개될 수 있음

1) SB-54 Solid waste: reporting, packaging, and plastic food service ware.

1.3 SB 54의 핵심 변경사항

SB 54는 기존의 포장재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확보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생산자 비용 부담 차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이다. 특히 포장재의 소재뿐 아니라 무게, 구성요소 및 재활용 용이성 등 설계 특성이 생산자의 규제 이행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다.

<table>
<tr><th>핵심 변경사항</th><th>주요 내용</th></tr>
<tr><td>Recyclability & Recycling Rate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td><td>
• 2032년까지 모든 Covered Material의 재활용·퇴비화 가능성 확보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유통·수입되는 Covered Material은 2032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해야 함.
•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단계적 재활용률 목표 적용
✓ Plastic Covered Material의 실제 재활용률을 2028년 30%, 2030년 40%, 2032년 65%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함.
• 목표 달성을 위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
✓ PRO는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가정용 수거체계 외에도 Drop-off, Retailer Take-back 등 별도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선별·처리 인프라 개선 및 재생원료 최종시장 확보를 추진해야 함.
</td></tr>
<tr><td>Source Reduction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 감축</td><td>
• 2023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단계적 감축
✓ PRO는 참여 생산자의 Plastic Covered Material을 2023년 대비 2027년 10%, 2030년 20%, 2032년 25% 감축해야 하며, 중량 및 플라스틱 구성요소 수를 기준으로 관리함.
• 단순 경량화를 넘어 다양한 감축 방식 인정
✓ 불필요한 구성요소 제거, 용기 경량화, 적정 크기화, 제품 농축, 벌크 포장 전환 및 비플라스틱 소재로의 전환 등을 감축 수단으로 인정함.
• 재사용·리필 전환 및 플라스틱 구성요소 제거를 통한 감축 요구
✓ 전체 감축 목표 중 일정 비율은 재사용·리필 전환 또는 플라스틱 구성요소 제거로 달성해야 하며, 2032년에는 최소 10%를 충족해야 함. 단순 경량화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table>
<tr><th>목표연도</th><th>전체 감축 목표</th><th>재사용·리필 등으로 달성해야 할 최소 감축률</th></tr>
<tr><td>2027년</td><td>10%</td><td>2%(재사용 · 리필)</td></tr>
<tr><td>2030년</td><td>20%</td><td>4%(재사용 · 리필)</td></tr>
<tr><td>2032년</td><td>25%</td><td>10% (재사용 · 리필 또는 구성요소 제거 포함)</td></tr>
</table>
※ 재사용·리필 등으로 달성해야 할 최소 감축률은 목표연도별 전체 감축목표에 포함됨.
• 소비 후 재생원료(PCR,Post-Consumer Recycled Content) 사용에 따른 감축 실적 인정
✓ 승인된 대체 산정방식 적용 시, 각 목표연도에 PRO 참여 생산자의 캘리포니아 내 규제 대상 플라스틱 판매 · 유통량의 최대 8%까지 PCR 사용에 따른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PCR 함량은 제3자 검증이 필요함.
</td></tr>
<tr><td>Producer Fee & Eco-modulation
포장 설계에 따른 비용 차등화</td><td>
• 포장재별 관리비용을 반영한 Producer Fee 부과
✓ 포장재의 수거·운송·선별·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소재 및 유형별로 차등 반영하며, 재활용·처리가 어려운 포장재일수록 높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포장 설계 특성에 따른 Eco-modulation 적용
✓ PCR 사용, 경량화, 포장 최적화·표준화, Source Reduction 및 재사용·리필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추가 부담금 또는 비용 감면(Credit)을 차등 적용함.
• 라벨·잉크·접착제 등 세부 포장요소도 비용에 반영
✓ 용기 본체뿐 아니라 라벨, 잉크, 접착제 등이 재활용·퇴비화를 방해하거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Producer Fee에 반영되므로, 포장재 전체 구조의 Design for Recycling이 중요함.
</td></tr>
</table>

2. 일본 : 화장품 용기 설계 인정기준

2.1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설계 인정기준

일본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의 설계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거법인 「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은 2021년 6월 11일 공포되어 2022년 4월 1일 시행됐다.[1)]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7월 24일 샴푸·헤어린스·바디워시·손 씻기용 비누를 담는 가정용 플라스틱 용기의 설계 인정기준을 공표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25일 시행됐으며, 같은 해 2월 10일 최초 인정제품이 발표됐다.[2)]

설계인정은 일본에 거점을 두고 일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설계를 책임지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설계는 '리필·교체'와 '3R'의 두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본체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본체에 맞는 리필·교체 제품이 실제로 시중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샴푸병의 경우, 소비자가 그 병에 다시 채워 쓸 리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량화, 재생·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용, 재활용성 향상의 세 평가항목 중 한 항목에서 ★★★ 기준을, 다른 한 항목에서 ★★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의 개수는 각 평가항목의 기준 수준을 나타내며, 세부 기준은 본체 용기·병 형태 리필 용기·필름 형태 리필 용기별로 정해져 있다.[3)]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유형별 설계 인정기준

요구사항

리필·교체	• 해당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리필용 또는 교체용 제품이 실제로 시중에 있어야 한다. • 소비자가 본체를 다시 채우거나 교체용 제품을 장착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본다.
3R (Reduce, Reuse, Recycle)	• ①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경량화), ② 재생·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용, ③ 재활용성 향상의 세 항목 중 한 항목에서 ★★★, 다른 한 항목에서 ★★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R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 기준	★★★ 기준
경량화	본체	내용물 1 mL당 용기 전체의 플라스틱 중량 산정 (중량 표시 제품은 1 g당 산정)	0.400 g/mL 이하	0.125 g/mL 이하
	병 리필		0.080 g/mL 이하	0.055 g/mL 이하
	필름 리필		0.050 g/mL 이하	0.023 g/mL 이하
재생·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용	본체	용기 전체 플라스틱 중 재생재·바이오매스 유래분의 중량 비율 산정	10% 이상	50% 이상
	병 리필		15% 이상	60% 이상
	필름 리필		5% 이상	15% 이상
재활용성 향상	본체·병 유형 리필	병 몸체의 재질·색상·직접 인쇄 여부와 라벨·캡·펌프의 분리 가능 여부 확인	• 지정 원료규격에 맞는 PET·PE·PP 사용 • 몸체를 재질별로 분리 가능 • 충전재 미사용. • PE·PP는 밀도 0.97 g/cm³ 미만	• ★★ 조건 충족 및 PET 무착색, PE·PP 무착색 또는 백색 적용. • 몸체 직접 인쇄 금지(단, 레이저 각인·미세 로트 표시 등 허용) • 라벨 분리 및 캡·펌프 등 부속품 제거 가능
	필름형 리필	필름 각 층의 재질·적층 구조와 알루미늄박 사용 여부 확인	• 알루미늄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원료규격 충족	• ★★ 조건 충족 및 단일재질로 간주할 수 있는 구조 적용 • 각 층이 PE 또는 PP 단일 수지이고 개별 재활용이 가능한 적층 구조 허용

1) 일본 「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2021년 법률 제60호) 제1조·제7조·제8조. 일본 환경성, 「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 시행 통지」, 2022. 4. 1
2) 일본 경제산업성,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설계인정기준」(고시 제113호), 2025. 7. 24
3) 일본 폐기물·3R연구재단(JWRF), 「가정용 화장품 용기 설계인정 신청 안내서」, 제1.0판, 2025년 8월 발간.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설계 인정 사례[1)]

기업	제품	용기 유형	설계 특징
Unilever	 LUX 배스글로우 리페어 앤 샤인 샴푸[2)]	본체	✓ 무착색 단일 PET로 병 몸체 제작. ✓ 병 몸체 기준 재생재 100% 사용 (착색제·첨가제 제외)
kao	 비오레u 거품 핸드소프 (ビオレu 泡ハンドソープ) 외 리필 2종[3)]	본체·병형 리필	✓ 본체에는 넓은 입구, 리필 병에는 좁은 주입구 적용. ✓ 본체와 리필 병 모두 백색 병과 분리 가능한 라벨 사용. ✓ 리필 병의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P&G	 h&s 포 맨 볼륨 업 샴푸[4)]	본체	✓ 펄 안료를 사용하지 않은 백색 병에 분리하기 쉬운 인쇄 수축필름 적용. ✓ 장식 인쇄를 필름에 배치해 병 소재의 잉크 오염 방지
ZACROS	 MONOSOLUTIONS Flowpack PL 샴푸 300 mL[5)]	필름형 리필	✓ 복합소재 파우치를 PE 단일재질 구조로 전환. ✓ 손으로 개봉해 본체에 샴푸를 따를 수 있는 1회 리필용 파우치 설계

1) 일본 환경성, 「설계인정 플라스틱 사용제품 목록」(PDF), 2026년 9월 기준·10월 갱신.
2) 유니레버 재팬, 「가정용 화장품 용기 분야 제1호 설계인정 취득」, 2026. 2. 13
3) 가오, 「'어택 ZERO' 등 3개 제품 설계인정 취득」, 2026. 2. 12.
4) P&G 재팬, h&s 공식 제품 카탈로그, 「포맨 볼륨업 약용 샴푸」; ZACROS, 「MONOSOLUTIONS 폴리에틸렌 단일소재 리필 파우치, 필름 용기 최초 설계인정 취득」(PDF), 2026. 6. 4.

V

기업 대응 및 시사점

국내와 주요 수출시장은 재생원료 활용, 불필요한 포장 감축, 사용 후 재활용성 제고라는 방향을 공유하지만, 이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은 시장마다 다르다. 화장품 기업은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시장과 배송 방식에 따라 기존 포장 사양을 유지하면서 증빙을 보완할 수 있는지, 용기 설계나 배송포장을 조정해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제품·포장 정보와 공급사·물류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을 살펴본다.





국내외 포장규제의 공통 방향과 화장품 기업의 대응

국내와 주요 수출시장의 포장제도는 포장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고, 사용 후 포장재가 다시 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을 공유한다. 화장품 포장에서는 이를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용기를 만들 때는 새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배송할 때는 제품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며, 사용 후에는 용기와 부품이 선별·재활용되기 쉽도록 재질과 결합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같은 목표라도 시장별로 평가하는 대상과 방식은 다르다. 재생원료 활용을 예로 들면, 국내 감경제도에서는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EU의 최소 함량 기준에서는 대상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이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화장품 기업은 주력 제품의 용기 재질·부품 구성·배송상자 규격을 공통으로 정리한 뒤, 현재 포장 사양을 유지하면서 증빙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와 용기 설계나 배송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포장규제의 공통 방향과 시장별 판단 기준

검토항목	시장별 제도·판단 기준	기업 대응 시사점
재생원료 활용	✓ (한국) 인정된 재생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 감경 ✓ (미국 오리건주) 포장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입증 시 분담금 혜택 신청 가능 ✓ (일본) 대상 사업자의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 제출·실적 보고 ✓ (EU) 대상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요건	✓ 용기별 재생원료 함량과 연간 사용량 구분 관리 ✓ 오리건주 분담금 혜택 신청 시 포장 변경 전후의 환경영향 비교 필요
불필요한 포장 감축	✓ (한국)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관리 ✓ (미국 캘리포니아) 대상 플라스틱의 중량·구성요소 수에 대해 주 전체 감축목표 설정 ✓ (EU)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제한 예정	✓ 배송상자 규격 조정과 용기·부품 경량화 과제 구분
사용 후 재활용성 제고	✓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장재 분류별 재활용성 확인 ✓ (일본) 가정용 화장품 용기의 우수 설계에 대한 자발적 인정	✓ 부품별 재질·분리 방식 확인 후, 공통 사양 유지 또는 시장별 설계 보완 여부 판단



K·C·A
대 한 화 장 품 협 회
Korea Cosmetics Association

https://kcia.or.kr

2026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

CJ OLIVEYOUNG · LG생활건강 · CHANEL · 신세계 인터내셔날 · AMOREPACIFIC
애경 · L'ORÉAL KOREA · 유한킴벌리 · Aēsop · ESTĒE LAUDER COMPANIES · Zero to Seven
COSMAX · Amway · Johnson&Johnson · Kolmar · P&G

Graphics by Freepik

대한화장품협회의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2026은 Deloitte의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들을 위한 ESG 관련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ESG 관련 규제 내용의 경우, 2026년 10월까지의 최신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인증기준, 모범사례, 당국의 지침 및 해석 등 규제환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 환경의 변화·발전에 따라 장래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